##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72 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이연희·이광희·허종식

박상혁 • 복기왕 • 홍기원

서미화 • 한민수 • 정준호

정성호 • 문진석 • 한준호

박홍배 • 이정문 • 김남희

김정호 · 김윤덕 · 박 정

문금주 의원(19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사면, 감형,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음.

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등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 구되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하 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, 특히 헌정 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헌정질서 유린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더더욱 그러하다는 지 적이 있음.

이에 내란죄(부화수행의 경우는 제외)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

서는 특별사면, 감형,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임(안 제6조). 법률 제 호

##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특별사면, 감형, 복권은 「형법」 제87조제1호·제2호 및 제88조의 죄의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복권의 제한) 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(복권의 제한) ① 특별사면,
	<u> 감형, 복권은 「형법」 제87조</u>
	제1호ㆍ제2호 및 제88조의 죄의
	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.
(생 략)	$\underline{2}$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승)